

 보건복지부		<h1>보 도 참 고 자 료</h1>		
배 포 일	2020. 2. 24.(월) / (총 7매)			
중앙사고수습본부 관련기관지원반	담 당 자	이 중 규	전 화	044-202-2730
	담 당 자	심은혜 / 이선식		044-202-2732 / 274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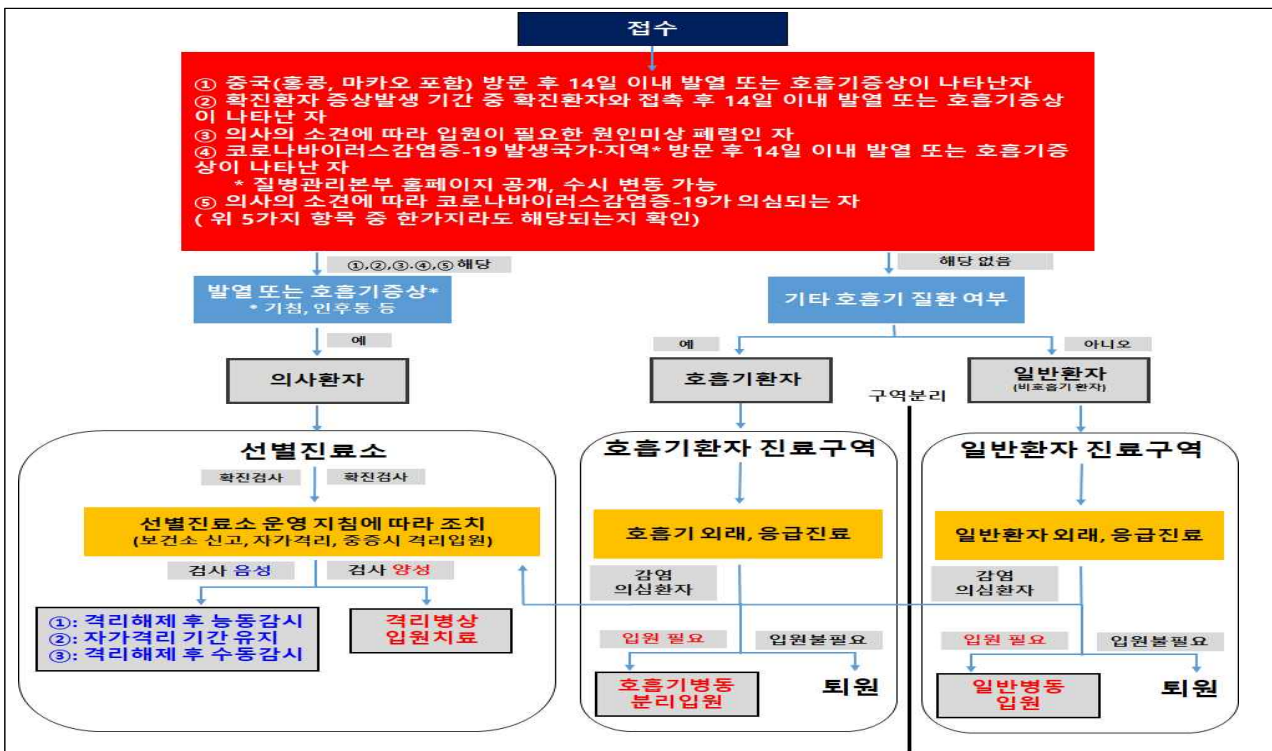
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「국민안심병원」 운영

- 보건복지부-병원협회 공동 지정, 호흡기질환 전담 외래·입원진료 실시 -

-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「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대응전략」(2.21) 후속 조치로 국민들이 코로나 감염 불안을 덜고,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‘국민안심병원’을 지정한다고 밝혔다.
- ‘국민안심병원’은 호흡기 질환에 대하여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하는 병원으로써,
 -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, 병원내 감염 위험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다.
- 코로나19의 대규모 병원내 감염(super-spread)은 폐렴 등 중증이 아니더라도 초기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,
 - 국민안심병원은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모든 호흡기질환자의 감염경로를 분리·차단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병원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.
 - 또한,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국민들이 의료기관 내원에 불안감을 가지고 필요한 진료도 기피하는 문제점과, 특히 호흡기 환자들의 경우, 일부 병의원의 진료 회피 등 정상적인 진료를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도 고려하였다.

- '국민안심병원'은 병원내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비호흡기 환자와 분리된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(외래·입원)을 운영한다.
 - 먼저, 코로나19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호흡기 환자 진료(호흡기 전용 외래)는 비호흡기 환자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*에서 실시된다.
 - * 감염병 유행시 컨테이너, 천막 등 분리 외래의 경험을 대부분 병원이 보유
 - 둘째, 입원 진료도 호흡기 증상이 아닌 환자와 동선 등을 분리하여 호흡기환자 전용병동으로 운영된다.
 - 또한, 「코로나19 대응지침」에 따라 코로나 진단검사 대상 환자는 입원실·중환자실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한다.
 - 또한, 국민안심병원은 방문객 통제, 철저한 의료진 방호 등 높은 수준의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 활동을 실시하며,
 - 일반 호흡기환자 진료시 적절한 개인보호구* 착용하는 경우, 확진자를 진료하여도 해당 의료진이 격리되지 않도록 한다.
 - * (개인보호구) KF94이상 마스크, 고글 또는 Face shield, 1회용 앞치마, 라텍스 장갑 착용

국민안심병원 개요



-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외래구역의 동선을 분리해서 운영하거나(A형), 선별진료소· 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(B형)하는 방안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, 요건은 다음과 같다.

< 국민안심병원(A,B) 준수 요건 >

① 국민안심병원 A·B 공통 요건

- (환자분류) 모든 내원 환자는 병원 진입전에 호흡기 증상, 발열, 의사환자 해당여부 등 확인
- (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분리) 모든 호흡기 환자의 외래 진료 구역을 비호흡기환자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
- (대상자 조회) 환자진료시 IIS(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), DUR(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)를 통해 해외 여행력 확인
- (감염관리강화) 손세정제, 1회용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비치하고, 전담 감염관리팀을 만들어 병원내 감염예방환경 개선
- (면회제한) 국민안심병원은 병문안 등 방문객을 전면 통제하고, 환자의 보호자만 출입 절차를 거친 이후에 출입 가능
- (의료진 방호) 호흡기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완비하고 철저한 위생으로 다른 병실로의 감염가능성 차단

② 국민안심병원 B 요건

- (선별진료소 운영)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운영
- (입원실·중환자실)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」에 따라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 환자는 격리해제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 격리
 - 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은 일반환자와 환자 동선 등이 분리되어 운영 되도록 조치
 - 「코로나19 대응지침」에 따라 코로나 진단검사 대상 환자는 입원실·중환자실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

-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의료수가 중 안심병원 감염 예방관리료가 호흡기 전용 외래·입원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시 적용되고(2만 원),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* 등 특례조치가 취해지며,
 - * (일반격리) 38천원 ~ 49천원, (음압격리) 126천원 ~ 164천원
-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정부(건강보험심사평가원)와 병협이 공동 점검단을 구성하여 이행요건의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.
- 국민안심병원은 2월24일(월)부터 대한병원협회가 신청을 받고 준비가 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하며, 안심병원 명단은 보건복지부, 병원 협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공개할 계획이다.
- 아울러, 병원계는 최대한 신속하게 참여를 확대하고 가급적 많은 병원이 동참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.

※ 문의 연락처 : 대한병원협회(코로나19 상황실 02-705-9213~9216)
건강보험심사평가원(자원관리부 033-739-4880~4881)

- <붙임> 1. 국민안심병원 신청서
2. 국민안심병원 요건 충족표

별첨 1 국민안심병원 신청서

국민안심병원 참여 신청서						
요양기관명		요양기관기호				
주소(상세히)		요양기관 종별				
설립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국·공립 <input type="checkbox"/> 의료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특수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복지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				
운영 현황 ¹⁾	호흡기 환자 분리 운영 병상 ²⁾	병상				
	격리가능 병상	음압격리병상수	병상	일반격리병상수	병상	
국민안심병원 신청유형 (A, B)		국민안심병원 시행가능일		년	월 일	
요양기관 운영 현황						
위 요양기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 사업기관 참여를 신청합니다.						
년 월 일						
개설자(대표자)				(서명 또는 인)		
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						
작성자 (모두 작성)	성명 :				작성일자	
	소속부서 :	/ 직책 :				
	전화번호 :					
	핸드폰 번호 :					
	이메일 :					
감염관리팀		(담당자)	(연락처)			
※ 작성요령 1) 운영현황 : 국민안심병원 B 유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 2) 호흡기 환자 분리운영 병상 : 확보 및 운영 예정 병상 기재 가능						

별첨 2 국민안심병원 요건 충족표

◆ **요양기관명 / 요양기관기호 / 담당자 성명, 전화, 핸드폰, 팩스, 이메일 기재 :** _____

항목	내 용	좌측 모든 항목에 대한 시행 가능 일자를 종합하여 1개 날짜를 기재 * 예 : '20년 2월 28일(목)
환자분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모든 내원 환자에 대해 병원 진입전에 호흡기 증상 또는 발열 등 해당여부를 확인하는지 여부 	<p>년 월 일(요일)</p> <p>부터 모든 항목 시행 가능</p>
호흡기환자 외래 진료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반 호흡기 환자의 외래진료 구역을 비호흡기 환자 진료구역과 완전히 분리하고 있는지 여부(시설/인력) - 현재 건물 외부 컨테이너, 천막 설치한 경우 또는 기존건물 내 유동인구 통제가 가능한 별도의 외래진료실 구비 여부(이 중 1개 요건 충족) • 환자 진료시 ITS(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), DUR(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)를 통해 해외 여행력 확인 여부 	
입원실 . 중환자실 (유형 B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의 병동을 분리하여 운영하는지 여부 - 병동을 분리함과 동시에 호흡기 입원환자와 비호흡기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	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인미상 폐렴환자를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」에 따라 격리입원 하는지 여부 • 폐렴으로 입원실·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입원전에 선제적으로 진단검사 실시 여부
<p>의료진방호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폐렴의심환자 진료 의료진의 개인보호구 완비 및 철저한 위생준수 여부 - KF94이상 보건마스크, 고글 또는 Face shield, 1회용 앞치마, 라텍스 장갑 등 • 평상시 모든 의료진이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진료하는지 여부
<p>면회제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방문객 전면통제 여부 - 단, 환자 보호자만 명부 작성 등 절차를 거쳐 출입 가능 • 환자 보호자 보호장구(마스크 등) 착용 여부
<p>감염관리 강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손세정제, 1회용 마스크 등 위생용품 비치 여부 - 출입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공간에 비치 • 병원내 감염예방환경 개선 및 대응을 위한 전담 감염관리팀, 신속대응팀 구성·운영 여부